

의안번호	2207999
의 퇴 인	안호영 의원
회 답 일	2025. 4. 8.
추계번호	25A0758

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조(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종합계획 등)	○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·변전설비를 체계적·효율적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3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2	안 제8조(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 설치)	○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에 대한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(이하 “전력망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(제1항)	의무규정
3	안 제9조(전력망위원회 구성·운영)	○ 전력망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하는 사항을 미리 검토·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망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실무위원회(이하 “실무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며,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 됨(제5항)	의무규정
4	안 제10조(전력망위원회의 사무기구)	○ 전력망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력망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5	안 제11조의2(민관협의회)	○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착수 이후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대표, 전문가,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6	안 제25조(지상 설치 전력망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)	○ 국가 또는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지상 공간에 설치되는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7	안 제26조(국가등의 지원)	○ 국가는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「전기사업법」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(제1항) － 1. 제4조제4항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기술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－ 2. 제21조에 따른 특별한 지원 － 3. 제23조에 따른 주민의 재생에너지 사업참여 지원 － 4. 제25조에 따른 에너지 복지의 재정적 지원 등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- 5. 그 밖에 개발사업을 위하여 전력망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정하는 사항	
8	안 제27조(지방자치단체 지원)	○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력망 확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연구개발, 행정지원,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6조(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종합계획 등)	○ 제1호: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
2	안 제8조(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 설치)	○ 미대상: 유사사례인 「송·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 ¹⁾ 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회의참석수당 등 ²⁾ 은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기본경비 예산 범위 내에서 충당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
3	안 제9조(전력망위원회 구성·운영)	
4	안 제10조(전력망위원회의 사무기구)	○ 제1호: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
5	안 제11조의2(민관협의회)	
6	안 제25조(지상 설치 전력망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7	안 제26조(국가등의 지원)	
8	안 제27조(지방자치단체 지원)	

1) 「송·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(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) ① 송·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계획
2.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른 송·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

2. 상세 사유

□ 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국가기간 전력망³⁾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기술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등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추가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(안 제25조 등)

- 참고로, 제정안의 발의(2025.2.7.) 이후 제정안의 주요 내용이 반영된 「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」이 2025년 3월 25일 제정되어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임

[표 1] 제정안의 재정수반요인과 현행 「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」의 관련 규정

제정안의 재정수반요인	현행 법률의 관련 규정
안 제6조(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종합계획 등)	법 제6조(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)
안 제8조(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 설치)	법 제8조(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)
안 제9조(전력망위원회 구성·운영)	법 제9조(전력망위원회 구성·운영)
안 제10조(전력망위원회의 사무기구)	—
안 제11조의2(민관협의회)	—
안 제25조(지상 설치 전력망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)	법 제24조(가공전선로 경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)
안 제26조(국가등의 지원)	법 제25조(국가의 지원)
안 제27조(지방자치단체 지원)	법 제24조(가공전선로 경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) 및 제25조(국가의 지원)

자료: 제정안 및 「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」(법률 제20844호)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3. 제9조제3항에 따른 송·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중단에 관한 사항
 4. 송·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관련 협의 및 이행 촉진에 관한 사항
 5. 그 밖에 송·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, 기능 및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2)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행 ‘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’는 연평균 3회 개최되고 있으며, 민간위원 6명에 대하여 회의 참석 1회당 10만원이 지급되고 있어 위원회 운영을 위해 180만원/연 정도 소요됨
- 3) 안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2. “국가기간 전력망 설비”란 「전기사업법」 제25조제6항제3호에 따른 주요 송전·변전설비계획에 포함된 34만 5천볼트 이상인 송·변전설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중 이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받은 설비를 말한다.
 - 가.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(이하 “재생에너지”라고 한다)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육상과 해상 송·변전설비
 - 나. 「원자력안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자력을 사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·변전설비

□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등의 내용 및 규모 등이 확정적이지 않으며, 국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현시점에서 합리적 가정에 따른 추계가 어려움

- 참고로, 제정안 관련 주요 송전설비 및 변전설비 현황을 보면,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765kV의 경우 선로길이는 551,849m, 변전소 수는 8개이며, 345kV의 경우 선로길이는 4,492,779m, 변전소 수는 117개임

[표 1] 주요 송전설비 및 변전설비 현황(2023년 12월 31일 기준)

구 분			765kV	345kV
주요 송전설비	선로길이(m)	가 공	551,849	4,492,779
		지 중	—	195,907
		수 중	—	—
	회선길이(c-m)	가 공	1,023,770	9,503,597
		지 중	—	490,279
		수 중	—	—
주요 변전설비	변전소 수(개)	—	8	117
	변압기 용량(kVA)	—	46,110,000	146,470,000

자료: 한국전력공사, 『한국전력통계(제93호 2023년)』, 2024. 5.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윤주철	권아영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윤주철	02-6788-4655	yjc@nabo.go.kr